



제417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노후준비서비스를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
모든 영역에 걸쳐 제공함 명시〉

■ 소병훈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235호)

2024. 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연 광 석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2
1. 노후준비서비스를 신체적 · 정신적 · 사회적 ·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 제공함 명시	2

I. 개요

1.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235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소병훈의원 등 12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7. 1.
- (3) 회 부 일 : 2024. 7. 2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,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‘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’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5조).

II. 검토의견

1. 노후준비서비스를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 제공함 명시

□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임을 명시함 (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호)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노후준비서비스”란 <u>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</u>
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·2. (생략) 3. 건강, 대인관계, 여가, 재무 등 <u>영역별</u>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	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영역별</u> ----- -----
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□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,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,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주기별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□ 현행법은 제2조제1호1)에서 ‘노후준비’를 ‘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’으로 정의하고, 같은 조 제2호는 ‘노후준비서비스’를 ‘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’으로 규정하고 있음.

< 노후준비서비스 분야 >

구분	주요 내용
재무	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자원관리 방안 제시
건강	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
여가	여행, 평생교육, 취미활동,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
대인관계	가족, 이웃 등과 건강한 소통을 위한 상황별 갈등관계 대처방법 소개

* 자료: 보건복지부

1) 「노후준비 지원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후준비”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노후준비서비스”란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.

□ 노후준비서비스는 보건복지부, 지방자치단체, 노후준비지원센터(중앙·광역·지역)에서 수행하고 있는바, 구체적으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(국민연금공단 112개 지사)가 노후준비서비스 연계 및 홍보·인식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, 이 중 거점지사(40개 지사)는 전문 및 심층 상담, 종합재무설계 제공, 노후준비교육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²⁾.

< 노후준비서비스 절차 >

- ① **(진단)** ‘노후준비 종합진단지(4대 영역)’를 활용하여 노후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결과를 리포트로 제공
 - * 진단결과 기반 상담 실시
- ② **(상담)**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며, 4대 영역별 실천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여 고객의 실제 행동변화 유도

- (전문상담) 4대 영역 전체에 대해 진단 후 상담
 - (심층상담)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목표 설정 후 수집된 재무·비재무 정보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설계 방안을 마련하여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 서비스

📎 ('23년 실적) 일반 상담 41,083건, 전문상담 2,390건 및 심층상담 3,597건 제공
- ③ **(관계기관 연계)** 상담 후 설정한 목표 달성 또는 과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지자체(18종) 및 전문기관(24개)의 서비스 연계
 - * ('23년 실적) 총 44,056건 연계서비스 제공
- ④ **(교육)** 노후준비 인식제고 및 실천 지원을 위해 4대 영역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콘텐츠를 통해 교육
 - * ('23년 실적) 총 8,420회, 186,895명 교육서비스 제공
- ⑤ **(사후관리)** 대면, 유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, 노후준비 관련 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

* 자료: 보건복지부

□ 개정안은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기 위하여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비롯하여 경제적 안정, 가족·이웃 등과의 정서적 유대,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연계 유지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, 노후준비서비스를 신체적·정신적·

2) p.6.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현황 및 서비스 제공자 인력 현황 참조

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려는 것으로,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의미가 있어 보임.

- 다만,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달리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영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해석상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, 예컨대 문화적 영역 등 그밖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‘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아울러,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정의조항(안 제2조제2호)와 같이 ‘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 준비’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, 노후준비 서비스가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02)6788-5498

【참고】	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현황 및 서비스 제공자 인력 현황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현황 >

(단위: 건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4월
계	85,080	99,880	47,070	3,393
일반상담	80,730	95,697	41,083*	-
전문상담	2,058	1,508	2,390	1,889
심층상담(재무)	2,292	2,675	3,597	1,504

* 기재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'23.7.1. 일반상담업무가 종료됨에 '23.1.1~6.30 실적이며, 일반상담(일부영역)은 거점지사(40개)에서 전문(전체영역)·심층상담(재무분야)으로만 진행함

* 자료: 보건복지부

<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인력 현황 >

(기준일: '24. 7. 1., 단위: 명)

구분	계	국민연금공단 (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)			지자체
		전문상담사	전문강사	민간 전문강사	
인원	208	89	35	58	26

* 자료: 보건복지부

